

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14. 3. 1. 개정 2015. 8.31.

개정 2016. 12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의 대학 창업친화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함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관련 부서의 장과 학부·학과장으로 5~7인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.8.31., 2016.12.23.>
2.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

제3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계획 및 추진방안 마련
2. 창업휴학, 창업대체학점 인정 등의 승인
3. 창업융복합전공제의 개발과 심의
4. 창업강좌 인정 심의
5. 기타 창업교육 학사제도 전반에 관한 업무 사항 심의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준용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